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7일, 김현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현정의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연광석 전문위원)

유사 입법례에서도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국회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정비 권고 용어에 포함하면서 순화 용어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생 략)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u>대차대조표</u>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재무상태표</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